

재해사례

(텐터기 롤러)

텐터기 상부 롤러 상태 확인 중 끼임



사포용 원단가공 텐터(Tenter)기에서 작업자가 사포용 원단가공 상부 가이드 롤러 상태 확인 작업 중 투입 중인 원단과 가이드 롤러에 끼임

※ 텐터기란? 원단을 원하는 가공 폭으로 조정하여 건조하는 설비



! 재해발생 원인

- 설비 가동 중인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작업 실시
 - 텐터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이송 중인 제품(사포용 원단)에 접근하여 이물질(보푸라기)제거 작업 중 회전하는 롤러부분에 끼임
 - ※ 작업발판 상단에서 끼임점 부위까지의 높이 : 165cm

+ 안전작업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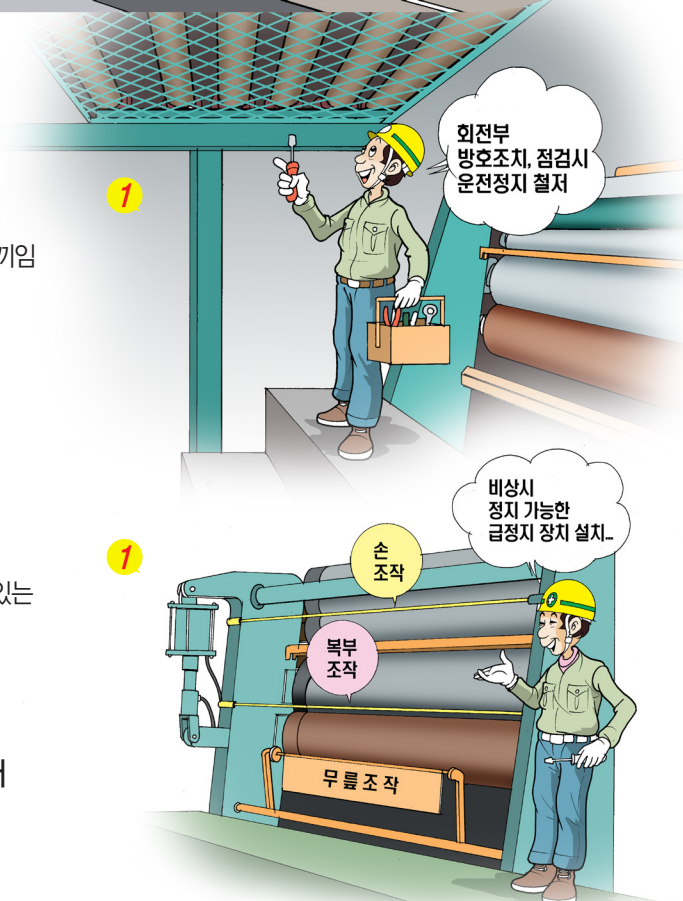
TIP

1 롤러 끼임 위험 부위에 방호조치 실시

- 끼임 위험이 있는 가이드 롤러와 원단 이송 부위를 방호할 수 있는 울 또는 덮개 설치
- 작업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설비를 급정지 할 수 있는 비상로프 등의 급정지 장치 설치

● 제품 확인이나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

- 점검, 정비, 청소 등의 작업 중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, 기동스위치에 “점검중” 표지판 설치





텐터기 상부 롤러 상태 확인 중 끼임

설비 운전 정지 후 점검, 청소 등의 작업을 하세요!

이번 사고는 회전하는 롤러부위 이물질 제거 중 1명이 롤러 회전방향으로 끼여 사망한 재해입니다.



오늘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체조를 시작합시다
하네 둘! 셋! 넷...



작업 전 체조와 안전구호를 제창하고 각자 작업위치로 이동합니다.



설비도 잘 가동되고, 제품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...



가동 중인 상태에서 고무코팅 장갑을 끼고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.



에! 보푸라기가 많이있네... 빨리 제거해야겠네!



롤러가 천천히 돌아가니 그냥 작업해도 괜찮겠지?



위잉~

척



점검, 청소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, 롤러 회전 부분에는 방호울 또는 덮개를 설치합니다.
또한, 위급시 사용 가능한 급정지 장치 설치도 중요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92조(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), 제95조(장갑의 사용 금지), 제123조(롤러기의 울 등 설치)

